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월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제도를 마련하여 신기술 보유 기업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4 및 5조 삭제)
- 나.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신청절차, 신기술 적용제품의 충족기준 및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17조의2 신설)
- 다.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 시스템 운영,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운영 관련 권한 위탁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21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없 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일 것
2. 제품·시설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시설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②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의견조회 및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9.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부 칙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생 략)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삭 제)
제5조(위원회의 운영)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운영) (삭 제)
<신 설>	제17조의2(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9 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시 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평가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 수산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일 것
	2. 제품·시설의 성능 및 품질이 같 은 종류의 다른 제품·시설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②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의견조회 및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 1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현행	개정안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 행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u><신설></u>	<u>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 · 시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u>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 <u>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 영</u>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 지와 같음) 9.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 <u>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u>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연락처	(044) 200 - 6222